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6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윤준병 · 이성윤 · 안호영
서영교 · 송옥주 · 박홍배
임호선 · 허성무 · 박용갑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심리·결정”을 “심리·결정 및 재해조사”로 한다.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

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재해조사의 종류·방법·대상·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제116조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5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u>심리·결정</u> 5. ~ 8.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심리·결정 및 재해 조사</u>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
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
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
다.

⑦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
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
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
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신 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재해조사의 종류·방법·대상·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 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 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략)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
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 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 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 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 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이 이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 를 도와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 · 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